

● 전남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1234호

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0년 3월 1일

전 남 대 학 교 총 장

1. 제정 이유

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학문 횡단형 교과를 이수하여 학문영역 간 전이능력과 통섭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우리 대학교 일반학부를 자율전공학부로 개편하여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자율전공학부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가. 조직 및 임무

- 1) 학부장: 학부업무를 총괄하며 학부를 대표
- 2) 지도 교수(겸임교수): 학생 학사 및 진로 지도업무 담당
- 3) 전임 교수: 외국어 강의 및 학사지도를 담당
- 4) 조교 등: 학부장을 보좌하여 학사업무를 담당

나. 자율전공학부 운영

- 1) 자율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) 자율전공학부 교과과정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) 자율전공 트랙 학생의 부·복수전공 선택에 관한 사항
- 4) 일반학부 트랙 학생의 학과선택 및 배정에 관한 사항

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운영 규정 제정

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운영 규정

제정 2010. 3. 1. 제1234호			
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목표) 자율전공학부는 학생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학문 횡단형 교육을 실시하여 학문 영역 간 전이능력과 통섭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, 비판적 사고 능력,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.

제3조(조직 등) ① 자율전공학부에 학부 업무를 총괄하는 학부장을 둔다.

② 학부장은 전남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.)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자율전공학부의 학사관리 및 분담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계열별 책임지도교수 각 1인과 지도교수를 두며,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자율전공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자율전공학부의 행정지원 및 학사관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⑤ 자율전공학부 내에 일반트랙을 둘 수 있다.

제4조(교과 및 전공이수) ① 학생은 이 대학교 교학규정에서 정한 자율전공학부의 교과과정을 교양과목, 전공과목 그리고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하되 자기설계전공으로 교과를 이수할 수 있다.

② 학생은 자율전공학부의 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다른 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공변경) ① 자율전공학부 학생은 이 대학교 학칙 제47조(모집단위간 이동)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자율전공학부 학생이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미 이수한 자율전공학부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중 일부를 이 대학교 교학규정에 의한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
③ 자율전공학부 학생이 모집단위간 이동 등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에 자율전공학부 학생에게 부여하는 각종 수혜 자격은 상실된다.

제6조(교과편성)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. 교양과목은 외국어, 표현력, 추리논증 등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과목으로 편성한다.

2. 전공과목은 문학, 역사·철학, 사회, 문화·예술, 자연·과학, 기술·공학 등의 분야별 교과목과 학제간 융합연구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분야, 논문작성을 위한 독립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
3.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일부는 외국어 강의가 가능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.

제7조(졸업자격인정) 자율전공학부의 졸업자격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졸업학점) 졸업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, 교양과목 36학점 이상, 전공과목 33학점 이상으로 한다.

제9조(전공표시) 학생이 자기설계전공,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한 경우 학칙 제59조에 의한다.

제10조(지도교수) 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과 동시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일반트랙) ① 일반트랙 학생(자율전공학부 인문+자연계열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학생)은 1학년 수료 후 전공배정 기준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다.

② 일반트랙 학생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

③ 일반트랙 학생에 대한 전공선택 및 교과과정 이수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, 교학규정 등 학사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제 1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2009학년도 이전에 일반학부에 입학하여 일반학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규정에 의거 자율전공학부 내 일반트랙 소속으로 한다.